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643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6435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가단2050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진성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 선고 2021. 5. 28.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가단20502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2015. 12. 1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이하 'C'라 한다)는 1995. 4. 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한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C는 2006. 11. 15.부터 2011. 9. 21.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0945호로 C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5. 12. 2. 'C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4.부터 2015.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재산분할로 1,0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 및 C의 항소로 진행된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2017. 6. 15. 위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C는 2015. 12. 10. 피고와 C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권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

다. 보전의 필요성

1) 다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 4,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546,000,000원으로 판단하였다.

㉠ 원고와 C의 순재산 : 4,165,378,747원

㉡ 재산분할비율 50%에 따른 원고의 몫 : 2,082,689,373원

㉢ 원고의 순재산 : 1,536,557,430원

㉣ 위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 546,131,943원

2,082,689,373원 - 1,536,557,430원 = 546,131,943원

나) 이 사건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인정된 C의 순재산은 2,951,683,261원, 항소심에서 인정된 순재산은 2,628,821,317원이고, 위 항소심에서 인정된 순재산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1	서울 구로구 L외 1필지 M건물 N호	250,000,000
2	이 사건 회원권	26,000,000	
3	E 주식 3,500주	218,816,500	
4	보유추정 금융기관 인출금	1,967,861,417	
5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등	176,248,320	
6	E에 대한 퇴직금 채권	9,895,080	
소계	2,648,821,317		
소극재산	7	순번1번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0,000,000
소계	20,000,00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2,628,821,317		

다) 이 사건 이혼소송의 제1심은 2015. 6. 24. 변론이 종결되어 2015. 12. 2.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2017. 3. 23. 변론이 종결되어 2017. 6. 15.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E는 C가 E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92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5. 8. 21. 'C는 E에 7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1.부터 2014.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E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91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6. 'C는 E에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9.부터 2018.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순재산이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2015. 6. 24. 당시 2,951,683,261원으로 인정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17. 6. 15. 당시 2,628,821,317원으로 인정되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12. 10.에도 동일한 재산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2015. 12. 10.을 기준으로 계산한 앞서 본 각 판결에 따른 C의 원고 및 E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 1,978,995,889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 558,113,698원(=㉠+㉡)

㉠ 위자료 : 12,113,698원

원금 : 10,000,000원

이자: 2011. 10. 14. ~ 2015. 12. 2.(연 5%) 2,069,863원

2011. 12. 3. ~ 2015. 12. 10. (연 20%) 43,835원

소계 : 10,000,000원+2,069,863원+43,835원 = 12,113,698원

㉡ 재산분할금 : 546,000,000원

② E에 대한 채무 : 1,420,882,191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926호 판결 : 1,051,142,465원

원금 : 795,000,000원

이자: 2013. 5. 31. ~ 2014. 8. 21.(연 5%) 48,789,041원

2014. 8. 22. ~ 2015. 12. 10.(연 20%) 207,353,424원

소계 : 795,000,000원+48,789,041원+207,353,424원 = 1,051,142,465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912호의 항소심 판결 : 369,739,726원

원금 : 300,000,000원

이자: 2011. 4. 19. ~ 2015. 12. 10.(연 5%) 69,739,726원

소계 : 300,000,000원+69,739,726원 = 369,739,726원

③ 합계 : 1,978,995,889원(=①+②)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판결에서 C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위 도표 적극재산
순번4번의 금원은 원고 또는 E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다시 C의 친인척들 계좌로 이체된 금원으로 C의
순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을 C의 순자산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중 재산분할금채권 금액은 이 부분 금원이 C의 순자산임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이다.
 - ②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이 부분 금원을 C의 순자산으로 주장하였고, C가 그 중 일부를 C의 순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C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③ C의 친인척들 계좌로 이체된 금액 및 계좌 명의인이 특정되고, 원고도 이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4) 또한 원고는, C의 적극재산 중 도표 순번1번의 부동산 자산은 이미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C의 무자력 여부도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12. 1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도표 순번1번의 부동산은 2015. 12. 10. 당시 C의 소유이었다가 그 이후인 2016. 1. 8. E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8. 31.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이므로, C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또한 원고는, C의 적극재산 중 위 도표 순번3번의 E 주식 3,500주의 실제 가치는 E가 실질적으로 영업 등 이익창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 이 사건 이혼소송 당시 평가된 218,816,500원과 달라 C의 적극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05361호로 C 소유의 E 주식 3,500주를 70,159,939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결정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12. 10.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내려진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E 주식 3,500주의 가치가 218,816,500원과 다르거나 위 주식이 C의 적극재산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황정수

판사장성훈

판사최수진

별지